

②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 Q&A

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유의사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취지는?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급기구 내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기존 수급기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준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 기구 축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리거주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분리 거주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증빙(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들이 필요하며, 분리 기준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하여야 하며 동일 시·군일 경우 보장기관의 별도로 인정이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임차료 입금증 등 증빙과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리거주 여부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연 2회 방문조사로 실제 거주여부 확인여부 및 분리거주 사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1.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기구 분리를 신청하세요.

2. 분리거주 해소시 반드시 부모 기구원과 합가사실을 자제에 알려주세요.

3. 실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내 방문조사시 협조해주세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조사기부로 금여체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4.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준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확인 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동계약을 권장합니다.)

21년부터 수급기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 위 사항들에 저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 징수)에 따라 환수할 수 있으며, 기구주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